

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60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00. 10. 10

제출자 파주시장

□ 제정사유

- 우리시에서 설치·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·계약을 하고자 할때 일반인에 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, 노인, 모자가정 여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공공시설은 시 및 소속기관 청사로 하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소속직원의 후생 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.(안 제2조)
-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·노인·모자가정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안 제5조)
-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(안 제8조)
-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관리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(안 제10조)

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, 노인복지법 제25조,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),노인, 모자가정의 여성(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)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의 범위) ①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
2.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
3. 시에서 출자·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

제3조 (사전공고등) ①시장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통보를 받은 담당과는 장애인등의 단체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고 장애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4조 (신청) 공공 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· 노인 · 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,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 (우선허가) 시장이 제4조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· 노인 · 모자가정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· 노인 · 모자가정중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자의 의무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과 설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, 시장이 공공목적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설사용허가등)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“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”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8조 (설치계약등) 이 조례에 계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 계약을 하여야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, 우선 계약대상 여부의 재평가 후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제9조 (설치계약의해지등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

1.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
3.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
4.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제1항중 제1호·제2호·제4호규정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자는 2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

제10조(사용료등)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,수도사용료 등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(공공요금)에 의한 실비만을 징수한다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3년간 유예 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 ☎ 940-4393
입 안 자	사회복지과장	이 평 자
	사 회 담 당	조 규 봉
	담 당 자	김 은 자

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신청서

신 청 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명칭(상호)		사업의 종류	
	소 재 지			

파주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신청합니다.

년
월
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파 주 시 장 귀하

구 비 서 류	없 음	처리기한	7일
---------	-----	------	----